

중국·대만·홍콩 보험시장의 상품 기능 확대와 보험회사 관리책임의 명시

이소양 연구원

요약

최근 중국·홍콩에서는 연금·장기요양 결합상품, AI 건강관리 보험, 다통화 운용·자산승계 기능을 갖춘 유배당 저축보험이 출시되는 등 보험상품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나, 새로 추가된 기능의 상당 부분은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음. 한편, 중국은 마케팅을 제3자 플랫폼에 위탁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대만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전제로 판매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홍콩은 유배당보험의 배당·비용배분·자산운용을 이사회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향후 보험회사의 경쟁기준도 계약 체결 이후의 관리역량으로 확대되는 모습임

1. 보험상품 기능의 확대와 서비스 제공주체의 외부화

가. 중국: 노후소득·장기요양·건강관리의 결합과 제휴 서비스 연계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여 노후소득·장기요양·의료비 보장 및 일상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 또는 서비스 체계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중국태평양생명보험회사는 2026년 3월 유배당 연금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한 ‘이후텐넨(颐护添年)’ 종합보장패키지를 출시하였음¹⁾
 - 해당 패키지는 유배당 연금보험인 ‘颐护添年养老金保险(分红型)’과 장기요양 관련 특약 등으로 구성되며 가입자가 건강한 기간에는 정기적인 연금 현금흐름과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른 배당 가능성을 제공하고 약관에서 정한 장기요양 상태가 발생하면 요양지원금과 장기요양보험금을 지급함
 - 장기요양보장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요양·의료·재활 관련 부가서비스 및 양로시설 이용 자격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노후소득 부족에 따른 장수위험과 신체기능 저하에 따른 장기요양위험을 현금급여와 현금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관리하려는 상품으로 볼 수 있음
- 중국태평양건강보험회사(이하 ‘태평양건강’)는 2026년 6월 건강고지 면제와 AI 기반 건강관리를 결합한 ‘란이바오·면건강고지 장기의료보험 유무판(蓝医保·免健告长期医疗险[有福版])’을 출시하였음²⁾
 - 이 상품은 별도의 건강고지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일반적인 기존 질환 가운데 보장책임에 포함되는 질환도 보장하며, 가입연령은 생후 30일부터 75세까지이고 5년간 갱신을 보장하여 고혈압·당뇨병·결절·B형간염 등 만성

1) 中国太平洋保险(2026. 4.), “长寿时代养老新解法：中国太保寿险创新推出‘颐护添年’保障计划”；中国太平洋保险, “太保颐护添年保险产品计划——老有所养, 老有所护, 老有所依”

2) 文汇报(2026. 6.), “服务型保险是大势所趋？蚂蚁阿福为蓝医保提供‘AI+真人’健康管理服务”；新华财经(2026. 6.), “蚂蚁阿福携手太平洋健康险探索服务型保险新趋势”

질환을 가진 중·고령자의 건강보험 접근성을 확대하였음

- 가입자는 태평양건강이 제휴한 ‘마이아푸(蚂蚁阿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AI 기반 건강상담과 건강검진 결과 해석을 받을 수 있으며,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 상담 및 진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는 보험금 지급과 같은 보장책임과 구분되는 부가서비스임
- 또한 태평양건강이 개발한 전용 AI 에이전트인 ‘란샤오바오(蓝小保)’도 가입자의 건강정보와 행동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건의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보험서비스의 제공 시점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질병 예방과 일상적인 건강관리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음

나. 홍콩: 유배당 저축보험의 자산승계 기능 확대와 외부 전문서비스 연계

○ 홍콩의 유배당 저축보험은 장기 저축과 사망보장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상품에서 계약 통화, 피보험자, 계약 소유권, 수익자 및 보험금 지급방식을 장기간 조정할 수 있는 자산승계 관리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음

- AIA 홍콩·마카오는 2026년 6월 고액자산가와 가족을 대상으로 유배당 종신 저축보험인 ‘Wealth Flexi Savings Insurance Plan’을 출시하였음³⁾
 - 이 상품은 하나의 보험계약을 여러 계약으로 나누는 계약분할, 사망보험금 분할지급, 정기인출, 배당금 결정 및 최대 9개 통화 간 계약 통화 변경 기능을 제공함
 - 가입자는 수익자의 특정 연령 도달이나 질병 발생 등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시기와 지급방식을 설정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건강 악화에 대비하여 보험금 수령자와 계약 소유권 이전 대상도 사전에 지정할 수 있음
 -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정신적 판단 능력 저하 등 사전에 정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계약의 관리방식을 미리 지정하는 ‘Future Wishes Arrangement’도 제공하며, 가입자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계약 소유권 승계, 보험금 지급 및 수령인 지정에 관하여 서로 다른 지시 사항을 설정할 수 있음
 - 계약 소유권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기 전 일정 기간 임시 관리자를 두는 제도와 계약을 여러 자녀에게 나누어 이전하는 계약분할 기능도 제공함
 - 다만 ‘Future Wishes Arrangement’와 임시 계약관리인 제도는 보험약관상 보장이라기보다 보험회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이용조건이 보험회사의 승인이나 서비스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홍콩생명(Hong Kong Life)도 2026년 6월 ‘Wealth Accelerator (Premier) Multi-Currency Insurance Plan’을 출시하여 외화 저축보험에 자산승계 기능을 추가하였음⁴⁾
 - 해당 상품은 홍콩달러·미국달러·위안화 등 9개 통화 간 계약 통화 변경, 횟수 제한 없는 피보험자 변경, 계약분할, 예비 계약자·피보험자 지정 및 피보험자 130세까지의 장기보장을 제공함
 - 수익자별로 사망보험금의 지급기간과 지급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승계 보너스도 제공함

3) AIA Hong Kong & Macau(2026. 6.), “Wealth Flexi Savings Insurance Plan”

4) Hong Kong Life(2026. 6.), “Wealth Accelerator (Premier) Multi-Currency Insurance Plan”

- 보험신탁 설정비용, 자산승계 관련 세무·법률 자문 비용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보험계약과 외부 전문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음

2. 보험회사 관리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는 규제 변화

가. 중국: 마케팅 위탁과 상품설계 단계의 책임 소재 명확화

○ 중국의 보험규제는 마케팅이나 상품 관련 서비스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 귀속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공업정보화부·시장감독총국·금융감독관리총국 등 8개 부처는 2026년 4월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동 규정은 보험을 포함한 금융상품 전반에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보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⁵⁾
 - 2026년 9월 30일부터 제3자 플랫폼은 보험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위탁받은 범위에서만 보험상품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기관에 다시 위탁하는 행위는 제한됨
 - 제3자 플랫폼은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이체 및 고객 적합성 평가와 같은 실질적인 판매절차에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청약을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연결해야 함
 - 보험회사는 협력 플랫폼에 대한 사전평가와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마케팅 내용의 적법성과 정확성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함
 - 이에 따라 알고리즘 추천·라이브방송·짧은 동영상 등을 활용한 마케팅도 보험회사의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관리 범위에 포함됨
-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2026년 4월 생명보험·건강보험·상해보험의 상품설계와 요율 산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보험상품 네거티브 리스트(2026년판)」을 보험회사에 배포하였음⁶⁾
 - 동 네거티브 리스트는 상품약관 표현, 보장책임 설계, 요율 산출·계리 가정 및 상품 보고·등록 등 네 가지 영역의 105개 문제 행위를 제시함
 - 유배당보험 상품설명서에서 이익예시보다 높은 배당 비율을 사실상 약속하는 행위와 의료보험에서 처방전 심사 책임을 제3자 서비스업체에만 부담시키는 상품설계 등이 금지됨
 - 과도하게 높은 면책금액이나 지나치게 낮은 보험금 지급비율을 설정하여 의료보험의 실질적인 보장기능을 약화하는 문제도 동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됨
 - 이는 판매 이후 발생한 불완전판매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상품구조 자체를 설계·신고 단계에서 통제하려는 감독기준임

5) 中国人民银行等八部门(2026. 4.), “中国人民银行 工业和信息化部 市场监管总局 金融监管总局 中国证监会 国家知识产权局 国家网信办 国家外汇局公告 [2026]第9号”

6) 新华网(2026. 4.), “新版人身保险产品‘负面清单’出炉 进一步规范产品费率厘定等问题”

나. 대만: 판매절차 간소화와 보험회사 중심의 통제체계

○ 대만은 보험회사와 판매채널이 중복적으로 수행하던 소비자 보호 절차를 줄이되, 보험회사가 마련한 내부통제 체계 아래에서만 절차 간소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험판매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2026년 7월 「보험중개인 관리규칙」과 「보험대리인 관리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착수하였음⁷⁾
 - 보험중개회사와 은행이 보험회사의 승인된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 판매과정의 녹음·녹화 및 확인 전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절차를 축소하였음
 - 약관대출이나 승환계약의 경우 확인 전화 대상을 보험계약자와 실제 비용부담자로 한정하여, 실질적 의사결정자 중심으로 보호 절차를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음
 - 고액자산가 대상 상품과 보험계약 담보 약관대출에서도 보험회사의 승인된 통제체계를 전제로 일부 절차 면제를 허용하여, 전문적 거래 특성을 반영한 별도 관리방식을 인정하였음

다. 홍콩: 배당·비용배분·자산운용 통합관리

○ 홍콩 보험업감독국(IA)은 2026년 3월 시행된 「유배당사업의 지배구조 및 기금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개정 GL34’)을 통해 유배당보험의 비보증 급부, 잉여금 및 배당 결정, 비용배분 및 자산운용을 이사회 책임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음⁸⁾

- 개정 GL34의 대부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유배당사업 관련 회사 정책을 규정한 제4절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
 - 이사회는 유배당사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고, 선임계리사는 예상 비보증 수익의 실현 가능성, 배분가능 이익의 배분 및 배당 결정, 비용배분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함
- 보험회사는 유배당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유배당기금 운영에 관한 독립적인 의견을 이사회에 제공해야 함
 - 동 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함
 - 또한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 배당 결정, 비용배분, 투자·위험관리 및 계약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검토하며, 보험회사는 관련 연례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보험회사는 이사회가 승인한 유배당사업 관리정책에 배당과 기금 운영의 주요 기준을 명시해야 함
 - 관리정책에는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 배당 결정, 비용·사업비 배분, 투자자산 구성, 자산·부채 관리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포함됨
 - 유배당사업에 귀속되는 자산·부채와 비용은 적절히 구분·배분하여 관리하고, 배분 가능 이익도 계약자와 주주 및 계약자 집단 간에 공정하게 배분해야 함

7)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6. 7. 9), “預告修正保經代管理規則, 以提升民眾投保之便利性、推動國際保險業務及維護消費者權益”

8) Insurance Authority, “GUIDELINE ON GOVERNANCE AND MANAGEMENT OF FUND(S) OF PARTICIPATING BUSINESS”

3.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중국·홍콩 보험시장에서는 보험상품의 기능이 노후소득·건강관리·장기요양 및 자산승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상품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연금·장기요양·건강관리를 결합한 상품이 등장하고, 홍콩에서는 유배당 저축보험에 다 통화 운용, 계약분할 및 자산승계 기능을 추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다만 건강관리, 요양시설 이용, 신탁 설정 및 세무·법률 자문 등 새로 추가된 기능의 상당 부분은 보험회사가 직접 제공하기보다 제휴사나 외부 전문서비스업체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 한편, 중국·대만·홍콩 보험시장에서 외부 사업자를 활용하거나 보험회사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하는 영역에서 최종 관리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규제 변화가 병행되고 있음
 - 중국은 제3자 플랫폼에 온라인 마케팅을 위탁하더라도 보험회사가 마케팅 내용의 적법성과 정확성에 대해 최종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음
 - 대만은 은행·보험중개회사의 중복 절차 일부를 면제하되 보험회사가 승인한 내부통제체계를 전제로 하여, 규제방식을 획일적인 절차 확인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 부과로 전환하였음
 - 중국의 배당 비율 약속 금지와 홍콩 GL34의 배당 결정·비용배분·자산운용 관리는 비보증 급부와 재량적 배분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귀속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보험시장의 경쟁기준은 예상수익률 등 가입 시점의 상품조건에서 제휴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능력, 판매채널 관리 및 계약 체결 이후의 고객관리 역량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큼

〈표 1〉 중국·대만·홍콩 보험시장의 주요 상품·규제 변화와 의미

구분	시장	주요 변화	의미
상품	중국	- 연금·장기요양 결합상품 출시 - AI 건강관리를 결합한 장기의료보험 출시	- 보험 기능이 노후소득·요양·일상적 건강관리로 확대 - 건강관리·요양시설 이용 등은 제휴사가 제공
	홍콩	다통화·계약분할·자산승계 기능을 갖춘 유배당 저축보험 출시	- 보험계약이 장기 자산관리와 세대 간 이전수단으로 확대 - 신탁 설정, 세무·법률 자문 등 외부 전문서비스 연계
규제	중국	- 제3자 플랫폼의 온라인 마케팅 위탁범위 제한 - 생명보험상품 네거티브 리스트로 상품설계·요율 단계 금지행위 관리	- 마케팅을 외부에 위탁하더라도 내용의 적법성 책임은 금융기관에 귀속 - 배당 비율을 사실상 약속하는 행위 등 비보증 급부 관련 설명책임 강화
	대만	보험회사가 승인한 내부통제체계를 전제로 고령자 판매 등 중복 절차 간소화	획일적인 절차 확인에서 보험회사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책임 부과로 규제방식 전환
	홍콩	유배당보험의 배당 결정·비용배분·자산운용에 대한 이사회 책임 및 독립 위원회 설치	비보증 급부와 재량적 배분에 관한 계약자 보호 책임을 보험회사 지배구조 내부에 귀속

자료: 저자가 정리함